

<서평 특집: 한국의 법학 명저>*

兪鎮午, 『憲法解義』
(명세당, 1949, 230쪽)

金孝全**

I. 서 설

玄民이 세상을 떠난 지도 올해(2007년)로써 꼭 20년이 된다.¹⁾ 당시는 민주화의 열기로 가득 찬 때여서 그의 제자 중에 꽤 이름이 알려진 인사 중의 한 사람은 친일파라고 하여 장례식마저 거부하는 일이 벌어져 뜻있는 사람들의 우려를 자아내기도 하였다. 또한 고려대학의 설립자인 김성수도 친일파라고 하여 그의 묘소를 고려대학교 교내에서 옮기라는 일부 졸업생의 시위도 기억에 생생하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듯이, 유진오는 문학가인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의 기초자

* 2007년은 경성제국대학 법문학부와 경성법학전문이 국립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으로 통합하여 우리 손으로의 법학교육이 본격적인 재출범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또한 내년 2008년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지 6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이에 법학연구소는 지난 60년 역사의 전반기, 즉 1977년 이전 발간된 한국의 법학 명저를 분석하는 <서평 특집: 한국의 법학 명저>를 기획하였다. 이번 호에는 우선 5권을 선정하여 서평을 수록하였고, 앞으로도 이 같은 기획 특집을 추가할 것이다. - 편자주

**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1) 유진오 헌법학의 전체상에 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영록, **유진오, 헌법사상의 형성과 전개**, 한국학술정보, 2006이 대표적인 업적이며, 기타 안경환, “유진오 -통합적 지식인의 삶-”, 김효진 편, **한국의 공법학자들**, 2003, 33-53면; 전광석, “헌법학자 유진오”, **연세법학연구** 제2집, 1992, 50-94면 참조.

일본 문헌으로는 國分典子, “韓國憲法思想の淵源: 第一共和國憲法制定における兪鎮午の民主主義觀を中心に”, **靑丘學術論集** 第20號, 2002 참조.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공법연구센터에서는 2006년 12월 2일 고려대학교 신법학관 402호에서 『헌민 유진오 선생 탄신 100주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여기서는 김일수, “법학교육자로서의 헌민”; 전광석, “유진오와 대한민국 헌법”; 장영수, “정치가, 행정가로서의 헌민 유진오”가 각각 발표되었다. 이들은 **고려법학** 제48호, 2007에 수록되었다. 같은 탄생 100주년 기념문집으로는 심재우 외, **지성의 길 - 헌민 유진오 선생-**, 한국인문사회연구원, 2007 참조.

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의 헌법학자로서의 전체상을 묘사하려는 것은 아니며 더더욱 그의 문학을 논하려거나 친일문제를 거론하려는 것도 아니다. 헌법학자로서 유진오는 여러 가지의 수많은 저술을 남겼는데 여기서는 그의 처녀작인 『憲法解義』의 한국 헌법학설사에서의 지위와 의미 그리고 영향 등을 살펴보기로 한다.

II. 『憲法解義』의 체제와 내용

먼저 이 책의 내용과 구성을 개략적으로 소개한다. 크기는 가로 14.7센티미터, 세로 20.5센티미터이며, 본문 209페이지에, 부록 65페이지 전체 274페이지이다. 부록에는 정부조직법, 국회법, 헌법위원회법, 탄핵재판법, 국회법 중 개정조문 그리고 영역 대한민국헌법인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가 수록되어 있는 아담한 책자이다. 영역은 미군정의 사법부 고문이었던 Ernst Fraenkel (1898~1975)²⁾과 당시의 ‘국회사무총장 현 총무처장’ 全奎弘이 번역한 것을 유진오가 수정하고 서울문리대 학생이었던 尹錫憲의 숨은 노력이 컸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초판은 단기 4282년(서기 1949년) 2월 15일에 발행되었고 단기 4285년(서기 1952년) 4월 20일에 증보판을 내었다. 필자는 이 증보판을 사용하였다. 인쇄소는 부산시 토성동이며, 발행소인 明世堂은 서울시 서대문구로 되어 있는 것을 볼 때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서울이 모두 파괴되어 피란지인 부산에서 인쇄하고 아직 수복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간신히 수복한 직후의 어려운 때라고 생각된다.

책은 크게 서론, 본론 그리고 부록의 세 편으로 구성된다. 서론에서는 대한민국 헌법제정의 경과, 대한민국헌법의 특징을 14페이지에 걸쳐 간단하게 서술하고 있다. 그는 우리 헌법의 특징으로서 첫째, 균등 사회의 수립을 기한 것(경제적 민주주의의 수립), 둘째 행정의 안정과 신속을 기한 것, 즉 미국식 대통령제의 도입, 셋째 국회의 단원제, 넷째 司法의 민주화를 기한 것의 네 가지를 꼽고 있다.

이어서 본론에서는 前文에서 시작하여 제1장 총강, 제2장 국민의 권리의무, 제3장 국회, 제4장 정부, 제5장 법원, 제6장 경제, 제7장 재정, 제8장 지방자치, 제9

2) 최종고, **한국의 서양법수용사**, 박영사, 1982, 248-165면 참조. 이 책에서는 프랭켈이 1974년에 작고하였다고 하나 1975년 3월 28일에 작고하였다.

장 헌법 개정 그리고 제10장 부칙을 조문 순서대로 逐條 解說하고 있다.

이 『헌법해의』는 1953년 1월 『新稿 憲法解義』라는 이름으로 一潮閣에서 다시 발간되었다. 그러나 서문에서 「書名을 개정판이라 하지 않고 신고라 한 것은 본서의 대부분은 이번에 새로 집필된 것이어서 본서는 舊書에 대하여 다른 저서라 하여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하여 초판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있다.

Ⅲ. 전설의 책

전설의 책이 된 유진오의 『헌법해의』는 그의 나이 43세에 저술한 것으로 대한민국 최초의 헌법 책은 아니다. 건국하자마자 최초로 우리나라 헌법의 해설서를 저술한 사람은 李昌洙이다.³⁾ 그는 공보 관계의 직에 있었기 때문에 헌법이 공포되자마자 곧 해설서를 출간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헌법에 관한 최초의 학술적 저술은 다음 해인 1949년 2월에 발간한 유진오의 『헌법해의』이다. 이 책은 「우리나라 헌법학의 출발점」⁴⁾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 그 까닭은 저자가 헌법기초에 직접 참여하고 또 막대한 영향력을 발휘한 점과 그때까지 우리나라의 헌법학자로서는 유일무이한 선구자였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진오는 자신이 헌법을 직접 기초하였지만 곧 법제처장으로서 건국초의 수많은 법률을 제정하고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등 ‘눈코 뜰 수 없는 다망한 처지’였기 때문에 헌법에 관한 저술을 차분하게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여하튼 만남을 무릅쓰고 상재한 이 책은 대한민국헌법에 관한 최초의 가장 권위 있고 정확한 해설이 담긴 헌법 코멘타르였다. 이 책에는 아무런 각주도 없으며 국내외의 참고문헌이나 전거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인용한 외국의 입법례 중에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헌법은 프랑스와 이탈리아와 일본국 헌법 조문을 인용하는 정도이고 그 대부분은 1919년의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을 비롯하여 제1차 세계대전 직후의 입법례와 연구서적 몇 가지에 근거하여 저술된 것이다.⁵⁾

사실 유진오가 대학에서 배운 헌법은 일본의 소위 명치헌법이란 것이었기 때

3) 문홍주, “헌법학 30년의 회고와 전망”, 서울대학교 법학 제19권 1호, 1978, 69면.

4) 문홍주, 위의 논문, 69면.

5) 김효전, “한국헌법과 바이마르 헌법”, 공법연구 제14집, 1986, 7-48면 참조.

문에 식민지의 법학도로서 흥미도 없었거니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 그가 자서전에서 술회하고 있듯이, 그는 헌법학자가 되리라고는 꿈도 꾸어본 일이 없으며 헌법이 아니라 국가학이나 헌법에 관련되는 법철학에 관한 책을 읽은 것이 그의 헌법 지식의 전부였다. 그러니까 그가 본격적으로 헌법 공부를 시작한 것은 해방을 맞은 39세 직후부터 대한민국헌법을 기초하기까지의 불과 3~4년 동안에 이루어진 것이다. 참으로 유진오의 천재성과 건국에 대한 열정이 어우러져서 대한민국헌법이 탄생되었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梨花莊으로 유진오를 부른 李承晩은 카펫 바닥에 앉고 의자를 유진오에게 건네면서 말했다. 「훌륭하오. 우리 한국 사람 중에 헌법을 기초할 사람이 있을 줄은 몰랐오」 하면서 나의 손과 무릎을 쓰다듬어 주었다. 나는 그저 황홀할 뿐이었다. 어렸을 때 역사상의 인물로 들어오던 노애국자가 나의 눈앞에서 카아펫 바닥에 앉아 나를 칭송해 주다니 꿈인가 생시인가 분간을 못할 정도였다.⁶⁾ 이처럼 이승만이 유진오를 칭찬한 것은 그저 노인이 젊은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에서, 또는 정치가로서 유능한 학자를 격려하는 뜻 이상의 것이 담겨 있었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승만은 독립 후의 한국의 헌법제정을 위해서 자신의 미국인 친구에게 헌법 초안의 작성을 부탁해 놓고 있었다고 술회한 적이 있기 때문이다.

IV. 유진오 헌법론의 두 가지 특성

이 『헌법해의』에서 전개한 유진오의 헌법론을 기본권과 정부형태 그리고 몇 가지 점에서 검토해 본다.

1. 기본권이론

유진오는 『憲法解義』에서 기본권을 엘리네크(G. Jellinek)의 지위이론(Statustheorie)⁷⁾에 따라서 분류하면서,⁸⁾ 일찍부터 생존권의 중요성도 다음과 같이 강조하고 있다.

6)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일조각, 1980, 61면.

7) G. Jellinek, *System der subjektiven öffentlichen Rechte*, 2. Aufl., 1905 (Neudruck 1979), S. 41, S. 81, S. 94. 김효전 편역, **독일 기본권이론의 이해**, 법문사, 2004 참조.

8) 유진오, **헌법해의**, 31면.

엘리네크 이래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분류방법을 따른다면, 인민⁹⁾의 권리·의무는 자유권(소극권), 수익권(적극권), 참정권과 의무의 네 가지로 구분되는 바 그 중 자유권은 미·불 혁명시대 이래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가장 치중되는 바 임에 대하여,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체제를 취하는 현대 국가에서는 수익권에 치중한다 함은 이미 周知의 사실이다.¹⁰⁾ ... 기본권의 분류법에는 전이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다 하여도 중점의 소재에는 실로 큰 移動이 있었으며, ... 사회적·경제적 민주주의의 발달은 인민의 기본권의 중점을 자유권으로부터 수익권으로 옮겨 놓았다.¹¹⁾

라고까지 말하였다. 사회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나머지 그는 기본권의 중점이 자유권으로부터 사회권으로 이동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실은 두 기본권이 같은 헌법구조 내에서 공존하는 것이지 그 우열을 말하기는 어렵다.

여하튼 이와 같은 엘리네크의 분류방법은 유진오의 일반사회 교과서를 통하여 한국의 고등학교에까지 보급되었으나, 이미 50년대 중반부터 일부 헌법학자들에 의하여 비판을 받기 시작하였다.

국가주권설 또는 범실증주의로 대표되는 엘리네크의 이론은 대전 후 독일 자체 내에서도 이미 그 추종자를 상실하고 자연법론의 회귀는 거의 정설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국법학이론을 가지고 일방통행식으로 국민에게 계몽하던 시대는 지나고, 국가를 중심으로 한 기본권론에서 국민 위주의 기본권론이 강조되는 것은 국민주권의 원리를 채택하는 국가에서는 당연한 일이다.¹²⁾

또한 유진오는 「우리 헌법상의 자유권은 신앙과 양심의 자유(제12조)와, 학문과 예술의 자유(제14조)를 제외하고는 법률보다 앞서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

9) 한국 헌법에서의 「人民」 개념의 후퇴에 관하여는 유진오, **헌법기초회고록**, 94면 및 65면의 주 10 참조.

10) 유진오, “헌법제정의 정신”, **법정** 제3권 8호(1948) 및 제4권 3호(1949) 및 **玄民 유진오 박사고회기념논문집 헌법과 현대법학의 제문제**, 일조각, 1975년에 다시 수록. 이 책 461면.

11) 유진오, “우리 헌법의 윤곽 -18세기 헌법과 20세기 헌법-”, **법정** 제2권 9호, 1947 및 **현민 유진오박사 고회기념논문집**, 474-488면에 다시 수록. 이 논문의 일본역으로는 鈴木敬夫 譯, **わが憲法の輪郭**, 同人 編譯, **現代韓國の憲法理論**, 成文堂 1984, 3-18頁 所收.

12) 상세한 것은 김철수, **유진오의 기본권론, 법학교육과 법학연구**(고 정광현박사 추모논문집), 길안사, 1995, 288-323면 참조.

여 인정되는 것이니…」¹³⁾ 하고 기본권을 실정법상의 권리로 이해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현대에 있어서는 기본권보장은 그 고전적 의미를 상실하고 단지 ‘법률의 유보’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해진 것」¹⁴⁾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당시의 한국으로서는 유진오가 말하는 ‘고전적 의미’의 기본권을 경험하지도 못한 상태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권이냐 자유냐 하는 개념조차 생소한 신생국의 국민들에게는 헌법상의 기본권이 지니는 계몽적인 역할을 염두에 두었어야만 했다.

2. 정부형태론

원래 유진오의 헌법구상은 의원내각제였으나 이승만의 주장에 따라 하루 밤사이 대통령제로 바뀌었다.¹⁵⁾

제헌 헌법의 정부형태에 관하여 유진오는 대통령이 국회에 의하여 선거되고, 국무총리의 임명에 국회의 승인을 받는 점, 한국에는 政爭에 초연한 원수의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점차 의원내각제로 轉化하리라고 희망적인 관측을 하였다.¹⁶⁾ 그러나 헌법실제에 있어서 의원내각제의 ‘본질적 요소’¹⁷⁾인 국회의 정부에 대한 신임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또한 대통령의 강력한 권한행사로 인하여 의원내각제로서의 기능은 약화되고 대통령제적인 기능만이 작용하게 되었다. 헌법에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라는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를 혼합함으로써 대통령의 권한행사를 견제하려고 시도하였다고 보는 견해도 있으나,¹⁸⁾ 국무총리는 일단 국회의 승인을 얻어 임명된 후에는 단지 대통령을 보좌할 뿐이며 그에게 대통령을 견제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다.

그 후 1952년의 헌법개정에서 야당의 주장으로 대통령직선제와 바터된 국무원 불신임제(대통령을 제외)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국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불신임권의 남용을 제한하는 몇 가지의 장치를 두었다. 이에 반하여 정부의 국회해산권은 인정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승만은 헌법 제32조 2항에 규정된

13) 유진오, **헌법의 기초이론**, 100-101면 및 **교회논문집**, 461면.

14) 유진오, 위의 책, 85면 및 논문집, 481면.

15) 상세한 것은 김철수, “유진오의 헌법초안에 나타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 **한국사 시민강좌** 제17집, 일조각, 1995, 94-114면 참조.

16) 유진오, **헌법해의**, 123-124면, 152-154면; 동인, **민주정치에의 길**, 184면.

17) 유진오, **민주정치에의 길**, 183면에서는 무엇이 ‘본질적인 것’이고 무엇이 ‘이질적인 것’인가 하고 비난하고 있다. 이것은 헌법 조문상 가치의 위계질서를 구별하지 않는 그의 법실증주의적 사고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18) 윤근식, “한국의 정부형태”, 김운태 편, **한국정치론**, 1976, 282면.

상원의 구성을 자기 정치에 유리한 다수의 진출가능성이 희박하였기 때문에 허용하지 아니하였다.¹⁹⁾ 그밖에 의원내각제 실시의 기본전제가 되는 복수정당제는 1952년 자유당의 창당과 함께 그 초석이 놓여진다.²⁰⁾ 그러나 한국민주당(후에 민주당으로 당명 변경)이나 자유당이나 모두 이념면에서는 같은 보수정당이며, 사회민주주의 세력으로서 진보당이 있었고,²¹⁾ 공산당은 법률로써 금지되었다. 이 점은 바이마르 공화국이 다수정당제이었던 것과 대조를 이룬다.²²⁾

요컨대 유진오의 기본권이론은 법률유보 조항을 둔 것에서부터 기본권의 자연 법적 성격을 이해하지 못한 종래의 법실증주의가 범한 오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것은 당시 한반도에 앉아서 세계 대세의 진운을 올바르게 파악할 만큼 민족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적극적으로 미래를 내다보거나 판단할 만한 능력이 결여 내지 한정되어 있었던 것이라고 보겠다.

또한 유진오의 의원내각제의 정부형태를 계속하여 주장하였는데 이는 자신이 배운 일본 명치 헌법 치하의 정부형태 내지는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정부형태를 염두에 둔 것으로 생각된다.²³⁾ 그러나 광복 직후의 한국으로서는 통치능력 있는 지도자에 의해서 신생국의 산적한 문제들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서도 대통령제로 결단을 내린 이승만의 판단이 옳았다고 본다.²⁴⁾ 학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헌정운영과 정치가가 생각하는 정치현실은 판이하게 다른 것이다.

19) 윤근식, 위의 책, 255면; 조병윤, “국회해산제도의 비교헌법사적 고찰”, 서울대학교 법학석사 학위논문, 1976.

20) 윤근식, 위의 논문, 256면 주 105는 이를 부정한다. 그러나 G. Henderson,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 1968, p. 303에서는 Two-party system으로 보고 있다.

21) 사회민주주의적 성격을 지닌 진보당은 1958년 당수 조봉암과 그의 간부들이 간첩과의 접선 혐의로 체포되고 1959년 사형이 집행되어 결국 해산되었다. 대법원은 진보당의 강령 자체는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으나, 정당해산에 대한 특권이 없었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해산되었다. 김철수, **헌법학개론**, 박영사, 2007, 228면 주 4 참조. 또한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153면 주 3에서는 「공보실장의 명령에 의해서 취소되었다」고 한다.

진보당에 관하여는 권대복 엮음, **진보당 -당의 활동과 자료집-**, 지양사, 1985 참조.

22) E. R. Huber, *Deutsche Verfassungsgeschichte*, Bd. 6. S. 134 ff.

23) 김효전, “한국 헌법과 바이마르 헌법”, **공법연구** 제14집, 1986, 27면 이하.

24) 한태연, **헌법학**, 법문사, 1983, 25면도 이승만의 대통령제가 옳았다고 본다. 한태연, “제한 헌법의 신화”, **동아법학** 제6호, 1988 참조.

V. 『헌법해의』의 평가

이 책은 단순히 대한민국헌법의 축조해설서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바이마르 헌법의 가장 표준적이며 권위 있는 안쉬츠(G. Anschütz)의 책처럼 이론과 실재를 모두 커버할 만큼 내용이 풍부한 것도 아니며, 마운츠(Th. Maunz)나 뒤리히(G. Dürig)의 주석서처럼 평생을 걸려 만들고 제자들이 이어받아 정치하게 해설하고 그 위에 규모로도 가장 방대한 코멘타르를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은 당시의 신생 대한민국의 열악한 지적 상황 속에서 일반 국민을 위한 훌륭한 계몽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각종 학교의 교과서로서, 나아가 수험서²⁵⁾로까지 크게 읽히고 널리 사랑을 받은 책자이다. 유진오의 법실증주의적인 헌법해석이나 의원내각제에 대한 지나친 기대 등은 쉽게 수긍이 가지 않는 면도 있으나 학자로서 그 정도의 소신이나 자기 주장은 애교로 보아 주면 될 것이다.

또 그의 업적 중의 하나는 그의 해박하고 광범위한 독서 위에 문학적 소양을 첨가하여 종래의 낡은 표현을 일소하고 헌법의 표현과 법률책의 서술법을 새로이 경신한 점에 있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글의 사용법이 정확하지 못하여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하였으나 당시는 아직 맞춤법이 통일되기 이전이고 또 일제의 식민지통치를 지난 지 얼마 안 되어 한글의 표기와 표현도 제각각이었다. 여하튼 유진오의 『헌법해의』 이후부터 법률책은 논리정연한 이론서로서의 표현 외에 간결하고 아름다운 문학적 필치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유진오는 법률문장의 순화에 일찍부터 앞장섰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유진오의 생애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사실은 유진오의 부친인 俞致衡(1877~1934) 역시 구한말에 관비유학생으로서 일본에 건너가서 慶應義塾 보통과를 졸업한 후 동경법학원(현재의 中央大學의 전신)에서 법률학을 공부하고 李冕宇, 張燾, 劉文煥과 함께 졸업한 것이다.²⁶⁾ 그 후 유치형은 보성전문에서 강의도

25) 수험서의 변천을 살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것이다. 1989년 1월 부산에서 개최된 제23회 변호사연수회의 주제 발표에서 필자는 오늘날의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질적으로 저하되고 있다는 법조계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 1940년대의 조선변호사시험 합격자는 활자가 커다란 200페이지짜리 유진오의 **헌법해의**로 공부했고,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오늘날의 수험생들은 활자도 작아진 1000페이지가 넘는 헌법교과서로 공부하는데 누가 더 헌법실력이 있겠는가 하고 반문한 일이 있다.

하였으며 1908년경에는 『헌법』 책도 내었는데, 유진오는 자신과 부친이 보성전문과 고려대학에 근무한 것을 「부자간에 무슨 운명의 연결 같은 것이 있는지도 모른다」²⁷⁾고는 했지만 부친이 헌법책을 만든 헌법학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한 적이 없다.²⁸⁾ 아버지의 업적을 자세히 알지 못했기 때문일까 아니면 자신이 한국 최초의 헌법학자라는 것을 두드러지게 보이기 위해서였을까? 쉽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또 한 가지, 책이름을 『憲法解義』라고 한 점은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 1841~1909)의 『憲法義解』²⁹⁾를 연상케 한다. 이토의 책이 명치헌법의 半官的인 권위를 가진 저서로서 유명하였던 것을 생각할 때, 유진오는 자신이 이토나 이토의 저서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싶었기 때문에 붙인 제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차라리 간단하게 『대한민국헌법』이라고 하거나 『헌법 해설서』 또는 『헌법 주석서』 같은 평범한 책 이름을 붙인 것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나 광복 직후의 우리의 카타스트로피에 가까운 상황 속에서 유진오 같은 인물이 있었고, 이 정도의 저작이 발간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커다란 축복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하루 속히 유진오 전집이 발간되어 그의 헌법학과 문학 작품 전체가 새로운 조명을 받고 올바른 평가를 받는 때가 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26) 김효전, **개화기의 공법학자들 - 영광과 좌절 -**, 한국공법학회, 2003, 3-10면 참조.

27) 강수웅, **민사재판의 해부**, 사법행정학회, 1982, 256면.

28) 유진오, **양호기**, 고려대출판부, 1977에도 아버지를 따라 보성전문과 대동전문 등에 따라갔던 일이 있다는 정도로 기술하고 있을 뿐이다.

29) 이 책은 1889년에 발간되었으며, 1940년 동경대학 헌법학 교수인 미야자와 도시요시(宮澤俊義, 1899~1976)가 補訂하여 **岩波文庫**에 수록하였다. 2005년 복각판이 발간되자마자 곧 매진되었다.